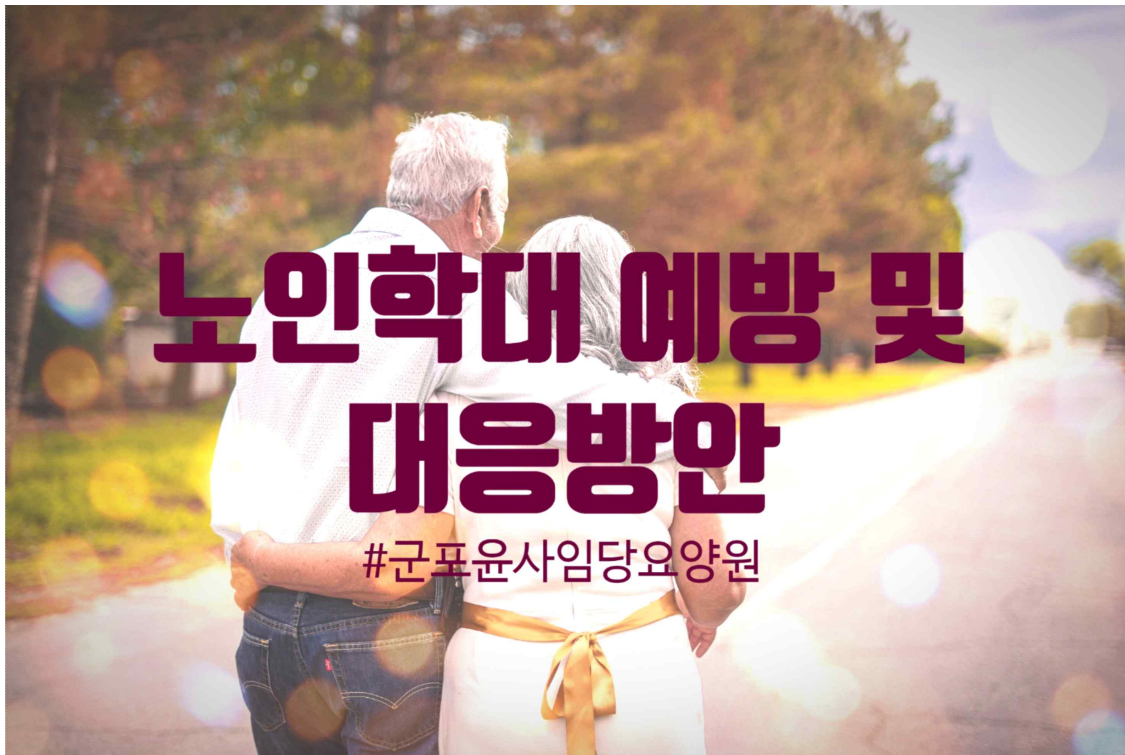


[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방안]



<노인학대에 관한 예방>

1. 노인학대 7대 예방수칙

- ① 누구도 노인을 학대할 수 없음을 확실히 압니다.
- ② 가능한 건강을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 ③ 자기 소유의 자산을 스스로 관리합니다.
- ④ 여가 및 사회활동을 지속합니다.
- ⑤ 변화하는 사회를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 ⑥ 가족에게 사랑한다는 표현을 자주 합니다.
- ⑦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사랑합니다.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 의료인, 노인복지시설 직원, 장애인 관련 모든 직원, 사회복지 상담원

2. 노인학대의 예측 징후

- ① 치료받지 못한 상처 및 부상이 발견된다.
- ② 다툼, 욕설 등의 큰소리가 자주 들린다.
- ③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동을 한다.
- ④ 노인의 물건 및 금품을 허락 없이 사용한다.
- ⑤ 식사를 거르는 등 영양실조나 탈수상태이다.
- ⑥ 노인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받지 않는다.
- ⑦ 노인을 시설에 입소시킨 후 연락을 두절한다.



3. 노인학대 6가지 유형

- ① 정신적 학대 : 비난, 모욕, 위협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
- ② 경제적 학대 :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아가는 행위로서 경제적 착취, 노인 재산에 관한 법률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 ③ 성적 학대 : 성적 수치심 유발행위, 성폭력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 ④ 방임 :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 의무를 의도적, 비의도적으로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 ⑤ 자기방임 : 노인 스스로가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보호 관련 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이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
- ⑥ 유기 :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4. 시설 생활 노인 권리선언

- ① 시설 운영 및 생활 관련 정보를 제공받고 입소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
- ② 개인적 욕구에 상응하는 서비스를 제공받고 선택할 수 있는 권리
- ③ 안락한 가정과 같은 환경과 안전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 ④ 개인적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 ⑤ 존경과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고 차별 및 노인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
- ⑥ 부당한 신체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 ⑦ 건강한 생활을 위한 서비스 제공받을 권리

- ⑧ 시설 내. 외부 활동 및 사회적(종교, 정치 등) 관계에 참여할 권리
- ⑨ 개인 소유의 재산과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
- ⑩ 이성 교제, 성생활, 기호품 사용에 관한 자기 결정의 권리
- ⑪ 고충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 ⑫ 퇴소를 결정하고 퇴소 후 거주지를 선택할 권리
- ⑬ 시설 종사자와 동료 노인의 인권을 보호해야 할 권리



5.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유관 기관의 역할

- ① 보건복지부/ 시·도/ 시·군·구
- ② 노인 보호 전문기관 : 노인학대 사례의 신고 접수, 신고된 시설 학대 사례에 확인 개입, 시설의 학대 사례 판정에 대한 자문, 학대 사례에 대한 사례관리 절차 지원 등
- ③ 노인복지시설 : 시설 내 노인학대 의심 사례 및 학대 사례 발견 시 노인 보호 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학대 피해 노인 및 학대 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개입 협조/보호가 필요한 학대 피해 노인에 대한 입소 의뢰 시 신속한 보호/시설 내 종사자 및 이용자 대상 노인학대 예방 교육 실시
- ④ 사법경찰 : 노인학대 신고 사례에 대한 현장 조사, 노인학대 행위자의 형사재판을 요하는 사례에 대한 수사 전담, 응급조치를 요하는 노인 학대 사례를 일시보호시설 또는 의료기관에 의뢰
- ⑤ 의료기관 : 다분야의 보건 의료 전문가로 구성된 학대 노인 보호팀을 구성·운영하며, 의뢰받은 학대 피해 노인에게 종합적인 의료 서비스 제공, 노인학대 판정을 위한 의학적 진단, 소견, 증언 진술인 학대 예방



6. 시설노인 인권 보호

① 시설 생활노인 권리선언: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공로자로서 헌법과 법률에 정한 기본적 권리와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을 권리를 지닌다.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은 기본적 권리를 가지며 어떠한 이유로도 권리를 침해받아서는 안 되며, 국가와 시설은 생활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② 시설 생활노인 권리보호를 위한 윤리강령

■ 입소 전 단계

-시설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받을 권리

■ 입소 계약 단계

-시설 입퇴소, 일상생활, 서비스 이용, 제반 시설 활동 참여, 권리와 의무 등 시설 운영 전반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노인 스스로 업소를 결정하며, 공정한 입소 계약을 맺을 권리

※ 입소 계약 '당사자'는 입소자 본인이 원칙이며, 인지능력 부족 등의 사유로 본인에 의한 입소 계약이 어려운 경우에 한 해 대리인 또는 보호자가 당사자가 되어 계약하여야 함

■ 생활 단계

-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받고 선택할 수 있는 권리

-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받을 권리

- 사생활과 비밀보장에 대한 권리

-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

- 차별 및 노인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

- 신체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 건강한 생활을 위한 질 높은 생활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

- 시설 내·외부 활동 및 사회적 관계에 참여할 권리

- 개인 소유의 재산과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

- 이성교제, 성생활, 기호품 사용에 관한 자기 결정의 권리

- 시설운영과 서비스에 대한 개인적 견해를 표현하고 해결을 요구할 권리

■ 퇴소 단계

-노인 스스로 퇴소를 결정하고 퇴소 후 거주지(원가정 복귀, 전원, 입원 등)를 선택할 권리

<노인학대 발견 시 대응 방안>

① 모든 시설 종사자는 동료 종사자 또는 생활 노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구체적 학대 행위를 목격하거나,

노인이 각각의 학대 유형과 관련된 증상을 보이는 사실을 목격하거나,

노인이 각각의 학대 유형과 관련된 증상을 보이는 사실을 목격하였거나,

노인이 학대받을 우려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해당 시설이나 노인 보호 전문기관,

관계 공무원 또는 노인복지상담원, 경찰 등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② 학대 위험상황에 처하거나 학대를 당한 생활 노인은 해당 시설이나 노인학대 관련 기관에 학대 위험 또는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③ 노인학대 신고번호 1577-1389 또는 129

<군포윤사임당의 노인 학대 예방 교육 시간>

